
2015년 인천SW융합BI-Plex R&D지원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모 안내서

2015. 2.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세부 사업별 공모 추진내용	2
III. 과제 신청 및 접수	3
IV. 추진 체계	4
V. 추진 절차 및 일정	5
VI. 평가 절차 및 기준	6
VII. 기타 유의사항	8
[별표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2

□ 사업목적

- 인천의 특화전략사업인 바이오산업과 IT산업에 4대 유망 SW분야 (ICBM)를 융합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 * 바이오산업 : 국가표준 KS J 1009(바이오산업분류체계)
 - * ICBM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SW융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한 인천지역 SW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지역 SW산업 경쟁력 강화
- 해외 수출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고취

□ 세부 사업내용

- SW융합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3억원 내외)

구분	SW융합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규모	총 3억원 내외(2개 내외 과제)
지원 내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BI·IT제품 + SW(지식서비스 포함)융합을 통해 B2C 분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SW융합 제품 개발 지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과제비의 75%까지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기업당 1개 과제만 제안 가능(주관·참여 모두 해당, 대학 제외) ○ 정액기술료 징수 과제 ○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 성공 시 인천SW융합BI-Plex 자생적 생태계 조성 및 후속사업을 위한 기부금 납부 가능 기업

SW융합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BT·IT + SW융합을 통해 B2C분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SW융합 제품 개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	○ 과제당 1.5억원 내외												
지원 분야	○ (SW융합 기술개발) 바이오, IT산업 분야의 시장성 높은 제품에 SW(지식서비스 포함)기반의 기(既) 확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특허)를 융합한 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 구축) SW융합 기술 기반의 시제품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및 SW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용자 환경 중심의 이용행태분석 실시 ○ (검증 및 보완) 테스트베드를 통해 도출된 테스트 결과서 및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검증 및 보완 실시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인천소재 SW중소기업 *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인천(SW융합클러스터 지정범위)으로 본사 이전 시, 타 지역 기업 참여 가능 * 주관기관이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을 경우 단독 제안 가능 ○ 참여기관 : 관련분야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이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제조기업 참여 필수												
지원 조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규모</td> <td>과제당 1.5억원 이내(12개월)</td> </tr> <tr> <td>지원 조건</td> <td>총 사업비의 75% 이내(연차별 지원) * 세부사항은 [별표] 1. 출연금 등 지원 기준 참조</td> </tr> <tr> <td>민간 부담률</td> <td>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하되, 그 중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10% 이상 * 세부사항은 [별표]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참조</td> </tr> <tr> <td>인건비</td> <td>산정가능</td> </tr> <tr> <td>기술료</td> <td>징수</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지원 규모	과제당 1.5억원 이내(12개월)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75% 이내(연차별 지원) * 세부사항은 [별표] 1. 출연금 등 지원 기준 참조	민간 부담률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하되, 그 중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10% 이상 * 세부사항은 [별표]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참조	인건비	산정가능	기술료	징수
	구분	주요내용											
	지원 규모	과제당 1.5억원 이내(12개월)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75% 이내(연차별 지원) * 세부사항은 [별표] 1. 출연금 등 지원 기준 참조											
	민간 부담률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하되, 그 중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10% 이상 * 세부사항은 [별표]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참조											
	인건비	산정가능											
기술료	징수												
성과물 귀속 및 기타 사항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 ○ 기술료 납부 이후, 일부 결과물에 한해 실시기관으로 소유권 양여 가능 ○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 성공 시 인천SW융합BI-Plex 자생적 생태계 조성 및 후속사업을 위한 기부금 납부 가능 기업												

1. 접수마감 : 2015. 3. 11(수) 17:00까지

-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 사업계획서 3부(원본1부, 사본2부)는 인편으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
- * 제출처 : (406-840)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99 애니오션빌딩 12층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김정환 선임

2. 접수방법(전산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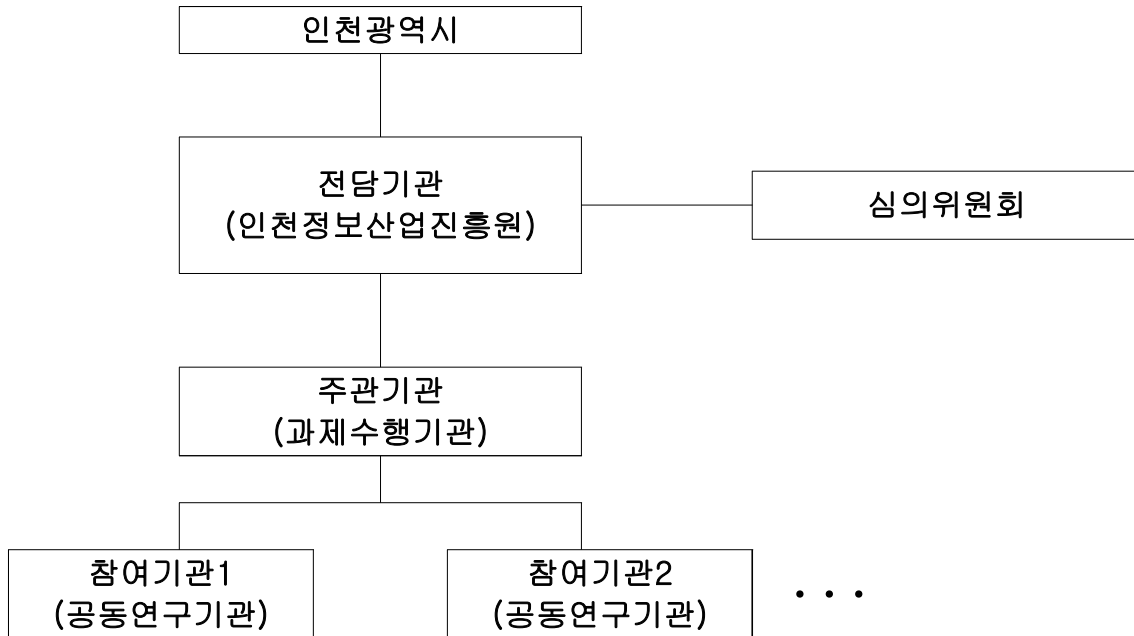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홈페이지 가입 후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인천SW융합BI-Plex R&D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 *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며, 반드시 접수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후, 사업계획서 3부(원본1부, 사본2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목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3부(원본1부, 사본2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수요기관의 참여의사 협약서 각 1부(해당 시 제출) ○ 기부금 납부 계획서 각 1부(해당 시 제출)
기업에 한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수행기관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현금출자(납입) 협약서 ○ 관리비 납부 확인서(증명서) 1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의 경우

- * 사업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해야 함
- * 발표자료는 평가 2일전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3. 문의처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 김정환 선임 (kjh529@inis.or.kr ☎ 032-723-9812)
 - 김연남 선임 (ynkim@inis.or.kr ☎ 032-723-9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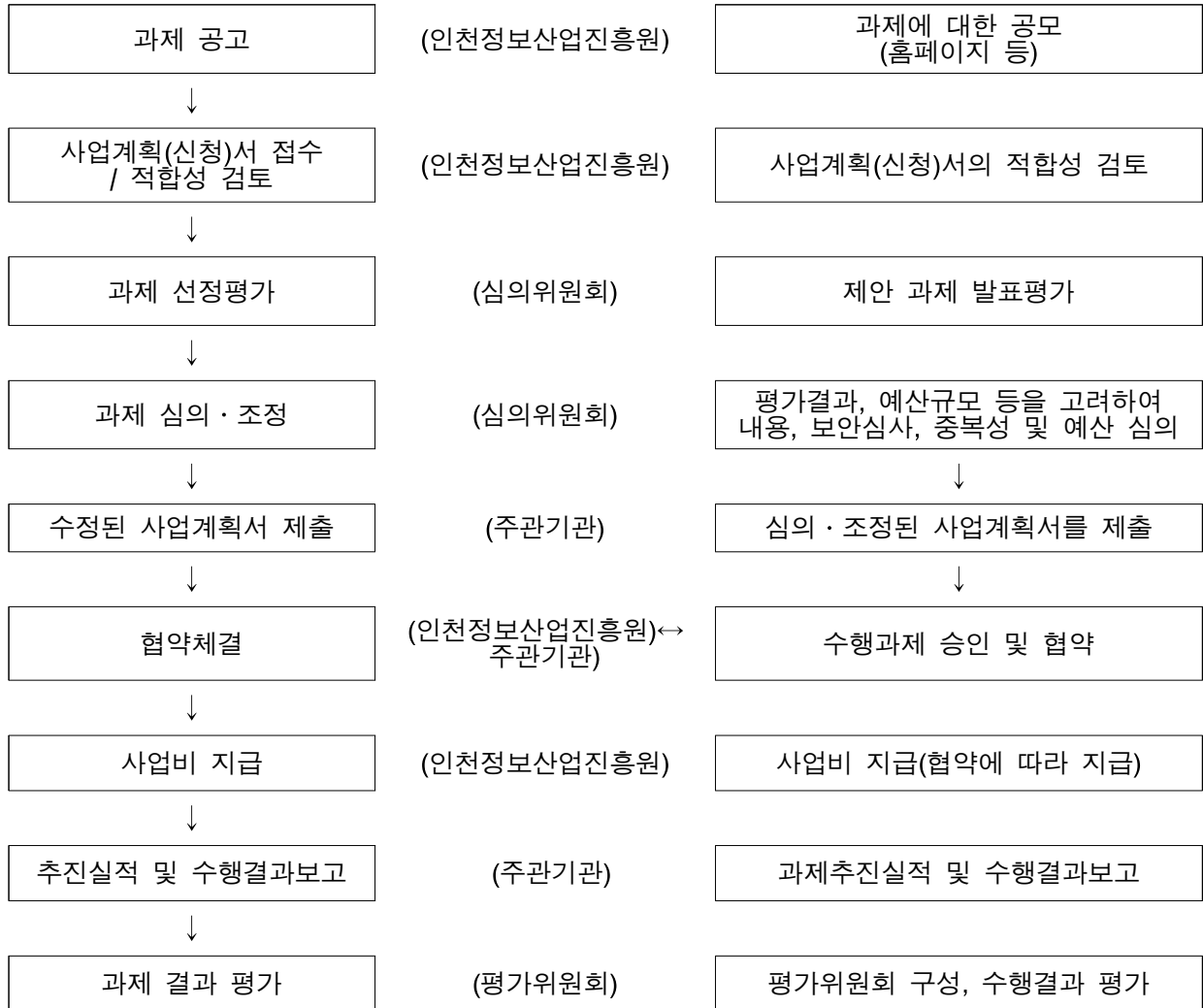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사업내용·범위 확정 및 예산 확보·배분 ○ 과제간 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의사 결정 등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 과제 추진범위, 예산 등 최종 심의조정 및 확정 (산·학·연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 총괄 및 협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과제관리 일체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전담기관과 공동) ○ 해당과제의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설치 등 추진 ○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 상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추진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15. 3. 11 : 과제 신청접수 마감(17시 마감)
- '15. 3. 12 ~ 13 : 적합성 검토 및 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 '15. 3. 17 ~ 18 : 제안과제 발표평가
- '15. 3. 23 ~ 27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일정은 전담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 절차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① 적합성 검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② 발표평가	심의위원회	○ 과제의 합목적성, 추진 효과, 과제 추진 여건 등	과제책임자 발표
③ 종합심의	심의위원회	○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적합성 검토 : 제출서류 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② 발표평가 : 신청 과제별 수행책임자의 발표(발표·질의응답 30분 내외)를 통하여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가 선정 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③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3.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 필요성/시급성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중요성 관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10
추진계획 타당성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기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준비성 ·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기술이전/사업화기간 포함)의 적정성 ·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타당성	10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측정의 명확성	10
기술성 및 연구개발수행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 개발목표가 해당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만큼의 도전성 · 연구개발목표가 세계 최고 기술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우위 여부 ·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혁신성 · 연구개발기술·제품이 세계 최초 기술 또는 PCT 출원 가능성	10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타당성 및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성/적합성 · 미확보 또는 애로 기술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법의 창의성	10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연구팀 운영능력, 수행기관/참여연구원의 기술력/전문성, 역할분담/구성의 적정성	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완성도)	20
	시장진입 가능성	·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화 소요 기간, 난이도를 고려한 시장 진입 가능성	10
	경제성	· 매출발생,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10
합계			100

* [가산점1]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산정방법 : 기업 현금 자부담금 대비 추가 현금 자부담금 비율을 산출하여 점수 산정

기존 현금 자부담 대비 추가 매칭 비율	90% 이상	70%이상~90%미만	50%이상~70%미만	30%이상~50%미만	10%이상~30%미만	10% 미만
점 수	5	4	3	2	1	0

** [가산점2] 수요기관 참여 평가점수 산정방법 : 수요기관 참여확약서 제출 기관(기업) 수

수요기관 수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미제출
점 수	5	4	3	2	1	0

1. 적용 규정

-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2014.01.06)’을 적용
 - * 본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2014.01.0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과제평가 및 수행관리

2. 지원과제 선정

- 신청과제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지원과제 결정
 - * 선정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사업 수행기간
 - 최종 기술개발 완료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운영기간을 포함

구 분	사업기간
총 수행기간	2015. 3. 1 ~ 2016. 2. 29

* 협약 일정에 따라 협약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비 관리

-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 직접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인건비 산정
 - 직접비 산정 시 기업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가능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해당 소분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에 한해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납부 금액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 선정평가기후상기 제외항목을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선정을 취소하거나협약을해약할 수있음
 - 관리비 미납기업(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의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6. 기 타

-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과제결과 활용실적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 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해야 함
- 기업 규모 구분
 -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별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 인 경우	중견기업 인 경우	대기업 인 경우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 의 50% 이내	가. 중소기업 : 연도 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중견기업 : 연도 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모두 중소기업 : 연 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모두 중견기업 : 연 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중소기업과 중견기 업 1개씩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 내 라. 그 밖의 경우 : 연 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중견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 경우	중견기업 경우	대기업 경우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5% 이상	가. 중소기업 : 연도 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 연도 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다.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가. 모두 중소기업 :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모두 중견기업 :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개씩 :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3% 이상 라. 그 밖의 경우 :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가.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비율이 3 분의2 이상 : 연 도별 민간부담금 의 13% 이상 다.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5% 이상